

## 겸임교수임용규정

제정 2003. 06. 27.

제7차 개정 2019. 12. 02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겸임교수의 자격,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1.4)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겸임교수라 함은 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 서 강의를 수행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① 겸임교수는 국가기관, 교육 및 연구기관, 언론기관, 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의 국가인정자격증 소지자(의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관세사, 세무사, 기술사 및 이에 상당하는 중요 전문분야의 자격증소지자)이어야 한다.

② 교수자격에 합당한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문분야 종사경력이 학사 학위취득자는 10년 이상, 석·박사학위취득자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4조(임용절차)** ① 겸임교수의 임용은 학과(부)장 및 단과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9.12.02)

② 겸임교수 임용을 위한 임용공고, 제출서류, 임용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, 임용심사 및 임용계약은 강사임용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 2016.02.15. 2017.05.25., 2019.12.02)

**제5조(구비서류)** ① 학과(부)장 및 단과대학장이 겸임교수 채용을 요청할 때에는 채용대상자의 학위전공 및 담당예정과목이 표기된 겸임교원 충원요구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교무·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겸임교수 임용 시 제출서류에는 지원자의 재직증명서와 재직기관장의 겸직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겸임교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.

[전부개정 2019.12.02]

**제6조(임용기간)** ①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개정 2012.4.25)

② 겸임교수의 재임용은 소속 학과(부)장 및 단과대학장의 겸임교원 재임용추천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따른 재임용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9.12.02)

**제7조(임무 및 처우)** ① 겸임교수의 학기당 강의시간은 3시간 이상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8.6.30. 2016.02.15., 2018.01.16., 2019.12.02)

② 겸임교수의 보수는 강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6.02.15)

③ 겸임교수는 본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**제8조(면직)**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.

1. 본직 기관의 직이 상실된 경우
2.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
3.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

**제9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대우교수·겸임교수 임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대우교수·겸임교수임용규정에 의거 임명된 교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으로 본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10, 2006.1.4)

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784, 2008.7.7)

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614, 2012.4.25)

이 규정은 2012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109, 2016.02.15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2월0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 임용된 교원은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임용잔여기간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230, 2017.05.29)

이 규정은 2017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28, 2018.01.16)

이 규정은 2018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593, 2019.12.02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

(별지 제2호 서식) (신설 2019.12.02)

## 겸임교원 재임용 추천서

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	
	소 속 학 과 명		전공분야	
	본 직 기 관 명		직 위	
직전임용기간 담당교과목	20 -1		( 학점, 시간)	
	20 -2		( 학점, 시간)	
재임용 추천사유				
활용 계획	담당예정 교 과 목	20 -1	( 학점, 시간)	
		20 -2	( 학점, 시간)	
	기대효과			

- 붙 임 : 1. 재직증명서 1부  
2. 재직기관장의 겸직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위와 같이 겸임교원 재임용을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학과(부)장 (인)

○○○대 학 장 (인)